

제140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 | | |
|-------------------------------------|----|
| 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1면 |
| 2. 서면답변서 | 3면 |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4.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4월 19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4월 20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4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4. 4. 26)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정이유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활성화 및 문화1등구로서
우리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재창단함으로써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립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원은 전행위원회의 심사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선발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안 제4조).
- 구청장은 단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종로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 이 중 환 위원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안 제2조중 “60인”을 “50인”으로 수정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원을 선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 수정안 본문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조(구성)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

- 안 3조의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를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하는 것은 합창단원을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의 폭을 확대한 것이며, 아울러 단장의 경우 가창력 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시되며 연륜 있는 자중에도 합창단운영에 적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에 단장을 추가하였음.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60인”을 “50인”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제2조(구성)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 -----50인 -----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